##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21 발의연월일: 2020. 10. 23.

발 의 자:허종식·김교흥·김정호

어기구・유동수・정일영

이성만 • 윤관석 • 박찬대

이해식 • 이규민 • 홍기원

황운하 • 배진교 • 오기형

송영길 · 양기대 · 이용선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등을 사용자가 제납한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도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개범위를 납부기한이 2년을 경과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가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체납 이후 기간이 길수록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는 바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건강보험은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민연금도 이에 맞추어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체납 관리를 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97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2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5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7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제97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	인적사항 공개) ①
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u>2년</u> 이 지난 연금	<u>1년</u>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이하 이 항에서 "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총액이 <u>5천만</u>	<u>1천만</u>
<u>원</u> 이상인 체납자(사업장가입	<u>워</u>
자에 한한다)가 납부능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	
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	
다. 다만, 체납된 연금보험료등	
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